

# 2023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고 (비즈니스 요소 사업화 과제)

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『2023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7일

평택시장  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 : 평택시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기업성장 도모

나. 모집규모 : 6개사 내외

다. 모집기간 : 사업승인일 ~ 3. 3(금) 18:00 限

라. 지원대상

- 참여기업 : 평택시 소재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 제조기업
- 협력기업 : 관내 대/중/소기업, 대학, 연구소, 기관, 농업법인, 유통업체 등

**※ 기존 관내 협력기업 간 사업 지원 불가, 신규 협력기업 발굴 필수**

마. 지원내용 : 관내 기업 간 사업화 과제비 지원

- 총 비용의 70% 지원(기업당 2,000만원 한도) ※ 부가세, 한도 초과금액 제외

지원항목	세부지원내용
비즈니스 요소 사업화과제	관내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요소의 발굴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과제비 20백만원 한도 • R&D·시제품제작·생산·유통·판매·A/S 등의 아웃소싱 • 주문자 위탁 생산방식(OEM),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(ODM) • 공동 개발·구매·영업·장비 임차·교육 등

## 2. 신청자격

### 가. 참여기업

- 평택시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
- 사업장 면적이 500m<sup>2</sup>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인 경우,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‘공장’ ‘제조장’ ‘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’로 기재된 중소기업

### 나. 협력기업

- 평택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등 소재 입증 확인가능한 대/중/소기업, 대학, 연구소, 기관

## 3. 지원제외대상

### 가.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업종분류	코드번호 (세세분류)	업종	업종분류	코드번호 (세세분류)	업종
숙박 및 음식점업	55112	여관업	부동산업 및 임대업	68111	주거용건물임대업
	55113	휴양콘도 운영업		68112	비주거용건물임대업
	55119	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		68119	기타부동산임대업
	55909	그외 기타 숙박업		68121	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	56111	한식 음식점업		68122	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	56112	중식 음식점업		68129	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
	56113	일식 음식점업		68221	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
	56114	서양식 음식점업		공공,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	96111
	56120	기관구내식당업	96112		두발미용업
	56119	기타 외국식 음식점업	96113		피부미용업
	56131	출장 음식 서비스업	96119		기타미용업
	56192	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	96121		욕탕업
	56193	치킨 전문점	96122		마사지업
	56194	분식 및 김밥 전문점	96129		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	56132	이동 음식점업	96912		가정용세탁업
	56199	그외 기타 음식점업	96913		세탁물공급업
	56211	일반유희 주점업	96921		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
	56212	무도유희 주점업	96922		화장, 묘지분양 및 관리업
	56219	기타 주점업	96991		예식장업
	56191	제과점업	96992	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	56220	비알콜 음료점업	96993		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
	91121	골프장운영업	96999	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	
오락업 및 문화업	91223	노래연습장운영업			
	91291	무도장운영업			
	91249	기타갬블링 및 베틀업			

나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
다.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

라. 부도기업 또는 국세,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중소기업

마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)

바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
사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중소기업

- 아.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자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
- 차.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
- 카.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

####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방법 : 이지비즈 홈페이지([www.egbiz.or.kr](http://www.egbiz.or.kr)) 온라인 접수

나. 필수제출서류

구분	제출근거	제출서류 목록
필수서류	평가기초자료	① 신청서(별첨 양식)
	필수자격요건	② 사업자등록증명, 공장등록증명(참여기관 및 협력기관) ③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(참여기관)
	체납여부확인	④ 지방세완납증명서(참여기관)
	예산 근거	⑤ 견적서(사업비 적정성 검토)
선택제출 (해당시)	기술성	①산업재산권(국내외특허, 실용신안 등), ②해외규격, ③신기술마크, ④품질인증 등
	가산점	①G-STAR기업, ②경기도유망중소기업, ③벤처기업, ④일자리우수기업, ⑤이노비즈, ⑥수출유망중소기업, ⑦사회적기업, ⑧장애인고용 우수기업, ⑨경기도일하기 좋은기업

다. 유의사항

- 온라인 접수 시 필수 기재사항은 제출서류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
- 번호 순대로 PDF 저장 후 파일명 기재 [번호. 서류명\_기업명]
- 온라인 제출인 관계로 모든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必

#### 4. 선정절차 및 지원금 지급

신청 · 접수	사업공고	• 시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egbiz.or.kr">www.egbiz.or.kr</a> ) 공고	GBSA
	신청서 작성/제출	•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	참여기업
심사 · 평가	서류심사	• 서류평가표에 의거 1차 평가	GBSA
	현장실사	• CEO 면담, 기업현황, 제조시설 등 현장확인	GBSA
	발표심사	•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선정/지원금 결정	GBSA평가위원회
	협약체결/지원금지급	•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※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, 자기부담금, 부가세 입금 완료 필수	GBSA 참여기업
사업 추진	과제 추진	•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수행	GBSA/참여기업
	중간점검	•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·점검	GBSA/참여기업
	완료점검	•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·점검	GBSA/참여기업
	사업비 정산	• 지원과제 완결 여부 등 점검 후 지원금 정산	GBSA/참여기업

## 5. 제재규정

### 부정당업체 제재규정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## 6. 문의처

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

- 전화 : 031-651-7162, E-MAIL : [shadmoon@gbsa.or.kr](mailto:shadmoon@gbsa.or.kr)
-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, 평택상공회의소 1층